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						
★ 특별시원 내수신처 : (
발굴기	[(성명:)	연락처			
대 상	이름		생년월일			
청소년	주소		연락처			
위 기 유 형	***************************************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해당 항목 모두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보호자 보호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보호자 비보호)					
√ 표시	□가출	1-2. 위기상황 □가출청소년 □빈곤 □가정폭력(아동학대) □(부모)정신과적 문제 □조손·한부모가정 □기타(구체적으로:)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기타(구체적으로:)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재학생(학교/학년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초·중등교육법」초·중학교 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적·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기타(구체적으로: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장애·질환(구체적으로:)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기타(구체적으로:)					
지 원 유 형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기타(구체적으로:)					
상 담 내 용						
		위 대상 청소년의 위기/ 20 년 월 일 신청	사항을 알려드립니 ^다 성인 발굴자	ł. (인)		

	사	회복지	기서비스 및	급여 7	데공(변	경) (닌청시	- 1	처리기	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변경신청	[□ 연장신	청		
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	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진 청 인	주소							휴대전화		
	1							전자우편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거강상타	4	취업상태		전화번호
	와의관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미동거 사유)				법 직정	명	(집/직장)
가 족										
기 사 항										
	※ 배우	·자 관계 ¹⁾ ((□ 법률혼 □ 사	실혼 🗆 사실	실상 이혼)					
	수급자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と 득 :	재 산 ^{월평} 지원	령균 실금³)	전화번호
	의									
부 양 의	의									
무 자 ²⁾	의									
	의									
	의									

¹⁾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사회복지서비스	노 및 급여 신청		[2 []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 초	생 활	보징	① 산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현금/현물) ⑤ 자활급여(차상위)				
	영 유 유 (아 아 ^호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초 · 중 교육비			(4) 교 [PC 1 [사용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아 동	등·청	소 년	□청				③학업지원 ④ 기타지원()자립지원)
	한부모	가족		□ 청□ 청	소년한부모 . 소년한부모 .		년한부모 아동잉 소년한부모 검	F육비 □ 청소년현 정고시학습비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난부모 자립촉진수당
	장 애	인	복 지			배우자동시신청 □ 학비 □		가급여) □ 장애 감지원	수당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자 ⑧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 <u>-</u>	도 인	<u>l</u> =	릭 지	□기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기		티	□차	상위본인부터		한구역 생활비용) ⊰ 보조 □ 희망키 네 아이돌봄서비스	,
							연계신청	0 1 / 1 - 1 - 1	
ブ	초생 : 상위 삼면신	, 장0	ㅐ인	□ 휴			「 □ SK 텔레콤	요금할인(고객번호 콕 □ LG 유플러 ·사업자명:	
		서비스 신청		□ 시	회복지공동도	금회 □ 우	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비 120%이하)
		인과의	·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조	<u></u>	비고(사유) ⁵⁾
급여 계죄									※대표계좌기재
	동지	l방법			付면 □ 선기	다우편(E-mail)	□ 문자메시지/	어비스(SMS) 니	기타()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 4)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5)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_			[3 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⁶⁾ , 사호	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 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 사자)			
안	기 타 관 계 인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내		타 관 계	타 관 계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 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계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기족, 기타(타법의료급여 ⁷⁾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II))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2/4분기 이후: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II)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 6)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유 의 사 항

-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연장시 3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 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 2.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2항,「의료급여법」제23조제1항,「기초연금법」제19조,「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 4호,「장애인연금법」제25조제3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 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5.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23조,「의료급여법」제3조의3,「기초연금법」제11조,「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9.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 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중·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_____(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원 성명 ¹⁾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원 원	원				
소	사업	(<u>무세메격골정)</u> 임업수득	원 원 원	<i>)</i> 원				
	소특	임업소득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	재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원 원 원 의 의 의 의	원의				
항	소득	연금소득	원 원 원	이 이 이 이 이 이				
	기타	시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기년 소득	(□구표함대 <i>)</i>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되지테 되었고도)	원				
		건축물	전 (지자체 [*] 지원금등) 원 토 지	- 원				
	(주택	, 건물, 시설물)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재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 1)				
산		일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사		금융재산		원				
' 항			□ 소 (마리, 원) ^{분양권} □ 돼지(마리, 원)	원				
Ö			□ 기타기층(미리 의)					
		동 산	□ 기리가격(이디, 전) 조합원 입주권 □ 종묘(원)	원				
			□ 기계기그르(이)					
			□ 기타(원) 외권권	원				
부		당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C	임대보증금		원				
채		공증사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기	구특성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지출요인 ³⁾		출요인 ³⁾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위	와 같	이 소득·재산 니	H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Jedes)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Ē	특별지	다치도지사ㆍ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동보하지 아니함 ³⁾ (서명 또는 인)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 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 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금융기관장 •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신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기초연금 등 해당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함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기초연금법」제12조제6항,「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6제5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